

# 건축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

## ◎ 법률 제4,562호

###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이유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건설공사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감리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새로운 공사방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외국의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를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가.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비를 정부출연금과 기업의 기술개발비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건설부장관이 건설기술연구개발투자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건설업자 외에 정부투자기관 및 건설

기술용역업자로 확대함(법 제16조의2 및 제17조).

- 나.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 외에 건설자재 생산·수입·판매업자도 자재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24조의2).
- 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원이 감독업무와 감리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감리원에게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에 관한 명령권등의 권한을 부여함(법 제27조 제1항·제2항 및 제28조의2등).
- 라. 새로운 공사방법을 적용하는 공사등 국내의 감리전문회사가 감리하기에 부적합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외국의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 단서).

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구조물의 유지·관리등”을 “완공된 구조물의 유지·보수·철거 및 관리등”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시공감리”를 “공사감리”로, “사업관리”를 “사업관리·구조의 안전성 검토”로 하며, 동조제5호중 “기술자격취득자”를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책임감리”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 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7.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 감리사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술자는 5년마다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설기술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동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설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의 출연금

제11조제2항중 “정부는”을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은”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① 건설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중 “건설업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건설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중 건설기술용역을 영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 제목 “(새로운 건설기술의 보호)”를 “(신기술의 보호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동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설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취소) 건설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2.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을 각각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품질관리”를 “품질관리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기술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등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종류·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건설자재의 품질관리) ①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그 자재의 품질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행자 또는 건설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의 생산자등에게 품질시험의 결과를 요구하거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의 참여하에 품질시험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종류·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 제목 (“품질시험의 대행”)을 (“품질시험의 대행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시험대행자(이하 “품질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시킬 수 있다.

④건설부장관은 제24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확인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품질시험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품질시험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되고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본문의 경우에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자격,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책임감리대가의 기준) 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책임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은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중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책임감리”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4항을 동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여 동항을 동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기술인력”을 “감리원”으로 하여 동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종류별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감리원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이 건설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동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중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각각 “책임감리”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감리전문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감리업무를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2항중 “소속공무원으로”를 “소속공무원 또는 연구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하고, 동조제3항중 “검사를 하는 공무원”을 “검사를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중 “시공감리자”를 “감리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은 시공감리자”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감리원”으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각각 “책임감리”로, “시공감리자”를 “감리원”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감리원이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건설공사감리자의 감독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행하는 공사감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을 각각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으로 한다.

제5장 및 제6장을 각각 제6장 및 제7장으로 하고, 제5장(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건설감리협회

제36조의2(건설감리협회의 설립) ①감리전문회사는 책임감리의 건전한 발전과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감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의 회원의 자격은 그 업무의 정지기간중 정지되며, 등록이 취소된 협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제36조의3(협회의 설립인가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4(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리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2. 감리원에 대한 교육 및 감리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
3. 책임감리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의 건의
4. 감리전문회사가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증 업무
5. 기타 책임감리와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업무

제36조의5(임원 및 선출방법 등) ①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6조의6(보고등) 건설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책임감리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7(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의견진술)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취소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상자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제37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 또는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중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책임감리”로 한다.

제40조중 “시공감리”를 “책임감리”로 한다.

제41조중 “시공감리자가”를 “감리원”으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각각 “책임감리”로, “2천500만원이하”를 “5천만원이하”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등
2.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또는 수입·판매한 자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의 품질시험 결과의 제출 또는 품질시험의 실시에 관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4.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를 업으로 한 자
5.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제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책임감리를 한 자(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7.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벌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받지 아니한 자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사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내지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5조의 제목중 “시공감리자의”를 “감리원의”로 하고, 동조본문중 “시공감리자는”을 “감리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설계등의 심의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공평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4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주·시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책임감리대리대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책임감리대리대가의 기준은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책임감리대리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로 본다.